

# 法醫學 概說

최진  
(가톨릭 의대교수)

법의학이란 무엇이라고 한다면 “사범운영에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여 이의 해결을 해주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법을 운영한다고 하여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꼭 의학적 사항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 이것을 잘 해결해 주므로써 재판의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의학의 목적은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 국민의 행복증진이 그 목적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에서는 법의학의 발전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고 일반국민 중에서도 이에 관심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

법의학에 관한 일을 하다 보면 진료과오에 관한 문제에 관한 문의가 많다.

진료를 법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1. 형법상의 진료

의사나 간호원이 진료를 하는 경우 상당히 심한 일들도 하는데 그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국가에서 면허를 얻어서 행하는 행위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2. 민법상의 진료

의사나 간호원이 환자에게 치료, 간호를 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a. 환자를 보통 또는 상당한 정도의 기술로서 치료, 간호하겠다.

b. 그 치료, 간호에는 성실을 다하겠다.

c.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판단을 사용하겠다.

그에 대하여 환자는 의사나 간호원의 지시에 복종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환자와 의사, 간호원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a. 사망, b. 퇴원, c. 상호협의, d. 인계자 결정 등의 경우이다.

환자와의 관계가 끊어진 후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과오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끊는 것이 현명한 때도 있다.

진료과오라고 하면 불량한 또는 부적합한 치료나 간호로서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윤리적 과오 :

형법이나 민법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떠한 행위가 의사 또는 간호원으로서 체면을 몹시 손상시켰을 때를 말하는데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 법법적 과오 :

우리가 국가에서 면허를 얻어 진료 및 간호를 하니깐 진료나 간호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일이지 지나치면 의료과오의 판정을 받는다.

간호원에서의 예에서 보면 과오는 간호를 잘못하여 자기 자신만이 책임지는 경우와 의사의 지시하에서 시행하다가 잘못되어 같이 책임지는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상해나 업무상 과실치사에 관하여는 형법 제267조 및 제268조에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과실에 비하여 엄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는 항상 인명과 관련있는 일을 하고 있음으로 주의를 더욱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간호원으로서 주의 의무 위반의 예를 들면,

### 1) 주사에 관한 의무

a. 소독, b. 주사약의 확인, c. 주사부위 확인

d. 주사후의 처치, e. 주사 기술상의 주의 등이 될 것이다.

2) 약제투여시의 주의

약제확인, 복용방법의 설명

3) 수혈수액에 관한 주의

소득, 주입속도, 입회, 간호

4) 수술에 관한 주의

소득, 체내에 가—제, 가위 등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5) 병실간호

환자가 병실에서 나가지않고,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병실의 화재 등 안전관리에 조심하고 환자를 대하는데 불친절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간호하여야 한다.

몇가지 예를 들었지만 적절치 못한 진료 또는 간호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되어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체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일 벌금형에 처해졌을 경우 벌금은 형사처벌에 한한 것이므로 벌금을 물었다 하여 민사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민사법정에서도 대단히 불리하게 되니 가능한 방법을 써서 벌금형 등의 가벼운 형이라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무료환자를 취급하는데 무료환자라고 해도 치료나 간호에 있어서 과오가 있으면 유료환자와 똑같이 처분을 받는다는 점이다. 꼭 기억하여야 한다.

민사상의 과오

이미 이야기한대로 환자와는 최선의 지식과 기술로서 성실히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되므로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고소당하면 그로 인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민사상의 과오는 구속되거나 벌금을 물지는 않으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법규로서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에 관한 것과 민법 390조에 채무 불이행에 관한

조항이 있다. 우리 의료인에게 이들중 하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두개의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

의사 또는 간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환자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민사법정에 청구하는 예이다.

이러한 경우 원고(환자측)는 법정에서 다음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1. 환자—의사 또는 간호원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따라서 빨리 이 관계를 잘라 버리면 유리한 경우가 많다.)

2.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3. 그 과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그 과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배상받을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한다. 만일 피해가 없으면 배상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 이야기한 4가지를 모두 환자측이 법정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이중에서 하나라도 증명을 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환자측에서 이상 4가지를 법정에서 증명한 경우라도 의사 또는 간호원은 변호사를 채용하는가 또는 직접 이 건에 대하여 반응을 들어서 방어할 수가 있는데 이 방어에서 지면 결국 배상을 해야만 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항

민사상으로는 환자진료가 일종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환자측에서 의사 또는 간호원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피해가 있으니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 보통은 이미 이야기한대로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 너무 환자 쪽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즉, 수술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환자는 마취를 하고 가족은 들어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의사, 간호원에게 과오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그 증거

를 제시하라는 것은 너무 부리한 요구이니 의사나 간호원 쪽에서드 진료나 간호에 있어서 100%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법정에서 증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을 의사나 간호원이 증명못하면 재판에서 패소하며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10여년전 일인데 일본에 가서 친구들(법의학 교수들)을 만나 이야기 하다 보니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일본에서도 과거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을 적용시켰을 경우에는 환자쪽이 이기는율은 30%도 되지 않았는데 근래에 와서 채무불이행의 조항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환자쪽의 승소율이 70%이상이 되었다고 한탄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환자쪽의 승소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배상을 한다고 배상액은 우리나라의 경우 호프만 식에 따라서 대략 산출된다.

사람이 죽은 경우는 그 나이가 30이라고 하고 그 연수입이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을 65才로 칠때(아주 정확치는 않다)그 산출 방법은 500만원×35=17,500만원(즉, 연수입 곱하기 평균연령까지 살 수 있는 나이를 곱한 것이다). 여기에서 일시금을 받는 이자와 그사람 개인이 살아있으므로 인하여 쓸수 있는 돈을 빼 액수가 대략 배상금이 된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배상금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만일 취직하고 있는 간호원인 경우는 경영자인 병원주인이 이것을 물어주돈가 또는 같이 물어 주도록 한다. 즉, 고용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고용주에도 있는 까닭이다.

의료과오에 관하여 종합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하였는데 간호원 여러분은 항상 경계심을 갖고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친절히 환자를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쁜중에도 공부하여 항상 기술연마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39페이지에서 계속>

태에서 질병별 접근에 따른 위험치 조차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문제발생 여지는 많을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전개를 위해 이 사업의 극히 적은 부분에 속하는 진료사업에 따른 보다 명확한 지침과 아울러 위험치제정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

적, 제도적,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원은 경미한 진료가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적어도 일차보건의료사업은 건강사업, 간호사업의 일환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에게 건강의 개념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제도자의 입장에서야 할 것으로 본다. ❧